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 제6장 제1절 및 학칙 제70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인사는 법령 및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가 정하는 교원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내지 제22조의4와 연구년규정 및 해외출장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비정년트랙 교원은 학칙 제75조에 정하는 교수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조교의 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재임용,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정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균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직위 및 직급이 상위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본 대학교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휴직’이라 함은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직무에 종사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위해제’라 함은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라 함은 교원의 신분을 면하는 행위를 말한다.

3-2-1~2 제3편 행 정

10. ‘정직’이라 함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그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을 말한다.

제4조(교원의 구분 및 직급) ①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그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개정 2012.08.10)

②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강의를 전담하는 교원, 교양 외국어를 전담하는 교원, 연구를 전담하는 교원과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산학협력을 담당하는 교원은 필요에 따라 정년트랙 교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재직 중인 교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10., 2013.09.27., 2016.09.30., 2016.11.29.)

제5조(교원의 자격) ①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고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정한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지며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정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2.08.10)

②교원은 신규임용, 기간제 임용 및 승진시에 당해 직급에 상당하는 연구실적을 갖추어야 한다.

③정년트랙 산학협력 교원은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하되, 임면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7)과 같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제6조(임용권자) ①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 제53조를 따른다.(개정 2015.05.26.)

②총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임면권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6.)

제7조(임용의 원칙) 교원의 임용은 그 자격,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8조(임용장의 수여) ①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소정양식의 임용장을 수여한다.

②신규임용 이외의 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에 대한 통지로서 임용장의 수여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때에 그 사망 전 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때에 그 확정일자를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따라 교원징계가 변경된 때

제 2 장 신규임용

제10조(신규임용의 원칙)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지원마감일 15일전까지 일간지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 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교원의 신규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교원을 신규임용 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 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 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 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 절차, 심사방법 등) 특별채용 대상자의 자격, 절차, 심사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제11조의 2(신규임용의 절차, 심사방법 등) ①교원의 신규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채용원서 및 구비서류의 접수
2.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3. 공개발표
4. 대학면접 (개정 2013.09.27.)
5. 법인면접 (개정 2013.09.27.)
6.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7. 총장의 재가 및 법인 임용제청 (개정 2013.09.27.)
8. 이사회 임용 의결 (개정 2013.09.27.)
9. 이사장의 재가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심사사항, 심사위원의 위촉 및 추천은 다음과 같

3-2-1~4 제3편 행 정

이 행한다.

1. 심사사항

- 가. 기초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을 심사한다.
- 나. 전공심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 다. 공개발표는 채용후보자의 강의능력을 심사한다.
- 라. 면접심사는 교원으로서의 인성 및 학문적 자세 등을 심사한다.

2. 심사위원 구성

- 가. 기초 및 전공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학과장이 추천하는 3인 이상의 교수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 중 3분의 1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
- 나. 공개발표 심사위원은 총장, 부총장, 기획부총장, 행정부총장,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학사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대학평가처장, 해당 단과대학장 및 기초·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학과 교수로 한다. (개정 2013.09.27., 2014.11.18)
- 다. 면접심사위원은 총장, 부총장, 기획부총장, 행정부총장,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학사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대학평가처장 및 해당 단과대학장으로 한다. (개정 2013.09.27., 2014.11.18)

3. 심사단계별 추천

- 가.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통하여 임용예정자의 3 내지 6배수 이내를 선발하되 공개강좌 또는 공개발표 및 면접심사에 참여할 추천배수 확정은 초빙분야별 지원현황과 평정점수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지원자가 3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나. 공개발표 실시 후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고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다. 면접심사 실시 후 각 단계별(기초 및 전공심사, 공개발표심사, 면접심사)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면권자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08.23.)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심사단계별 평정점수가 기준점수 이하일 경우에는 단계별 심사 및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과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재추천을 의뢰한 때에는 다시 평가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응모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
2.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적격자가 없을 경우

④제2항의 과정을 거친 추천자에 대하여 이사장이 재추천을 의뢰한 때에는 다시 서류심사 및 추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의3(신임교원의 제출서류) 신임교원은 임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교육 및 연구)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2부
6. 기본증명서(거주지 발행) 2부
7. 신원진술서(소정용지) 2부
8. 교원인사기록카드(소정용지) 2부
9. 연구실적물 : 학위논문 및 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각 1부
10.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11. 서약서(소정양식) 1부
12.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의4(신규임용대상자의 연구실적물 제출) ①신규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당해 초빙공고상 실적 인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09.27., 2014.11.18.)

1. 최근 3년이내의 200% 이상의 연구실적 (신설 2014.11.18.)
2. SCI급(A&HCI, SSCI, SCI, SCIE) 학술지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로 IF 상위 10%이내의 연구실적 (신설 2014.11.18.)
3. 초빙분야(이공계)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신설 2014.11.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 신규임용대상자인 경우 또는 대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하는 자가 신규임용대상자인 경우에는 과거에 발표한 연구실적물을

3-2-1~6 제3편 행 정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의5(임용계약) ①임용계약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직급
3. 연봉금액
4. 임용기간 만료후 재임용 되지 않을 경우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
5. 책임강의 시간
6. 기타 임용조건

제11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임용 및 신규임용 지원을 불허한다.(개정 2012.08.1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규 임용지원서의 허위 작성 또는 경력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10. 신규임용에 지원했던 자 중 학력 및 연구실적을 허위 또는 고의로 부풀려 작성한 것이 발견되어 탈락된 자(개정 2012.08.10.)
11. 기타 교원 신규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에 부적격한 자(신설 2012.08.10)

제12조(임용기간) ①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석사 학위 소지자인 교원과 한의과대학 임상교원(한의학과)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임상교원과 신입교원의 재계약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6.23., 2015.05.26., 2016.08.30.)

②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기간, 재계약과 정년트랙 전환임용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 내규를 따른다.(개정 2012.08.10., 2013.04.01., 2015.12.29.)

③2002.1.1이전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원인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

으로 정하는 기간

2. 정년트랙 교원인 부교수 : 6년

3. 정년트랙 교원인 조교수 : 4년

4. (삭제 2012.08.10)

④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교에서 정년보장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재직중이었던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3조(직급별 최소경력년수) ①신규임용교원의 최소경력년수는 직급에 따라 교수 14년, 부교수9년, 조교수 3년으로 한다.(개정 2012.08.10)

②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08.10)

④대학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 퇴직전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전 직급의 상위직급으로 임용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채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14조(경력년수의 계산) 교원의 경력년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경력년수는 관계법령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교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임상교원은 의학전문대학원교원 인사에관한세칙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06.23., 2015.05.26.)

2. 경력년수는 학사학위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한다.

3. 경력년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합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중복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은 그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15조(신임교원의 평가) ①계약제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계약기간까지의 연구와 교육업적은 교원업적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06.23.)

②계약제 신임교원의 평가결과 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으로 임용하며, 부적격자로 평가되었을 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학기 말에 당연퇴직 한다.

③특별채용되는 교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임시교원의 임용) ①교원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으로 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임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의2(계약제 신입교원의 신분) 계약제 신입교원은 계약기간동안 본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신분보장과 대우를 받는다.

제 3 장 승진 및 기간제임용

제17조(승진 및 기간제임용 시기) ①교원의 승진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실시하며 기간제 임용(이하 재계약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 (개정 2013.04.01)

②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고 다음 학기 개시일에 기간제 임용한다.

제17조의2(정년보장임용) ①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년트랙 교원중 교수승진대상자
2. 2002년 이후 임용된 정년트랙 교원은 그 직위에 따라 (개정 2017.02.23.)
가. (삭제 2017.02.23.)
나. 부교수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는 자 (개정 2017.02.23.)
다. 조교수로 임용되어 교수로 승진하는 자 (개정 2012.08.10., 2017.02.23.)
3. 특별채용된 경우는 따로 정한다.

②정년보장교원임용은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총장이 임용제청하여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4.01)

④정년보장교원의 정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60/100이내 수로 하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산정 시 의과대학 소속 임상의학교원은 제외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 승진임용 인원은 정년보장교수 정수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7, 2015.05.26.)

⑤ 승진임용대상자가 정년보장교수 승진임용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순위에 의하여 승진시키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후 임면권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3.02.27)

⑥정년보장심사는 매년 3월과 9월에 행한다. 다만, 정년보장교수로 승진되는 자는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에 임용한다.

⑦ (삭제 2012.08.10)

⑧연구실적 우수자는 제4항의 정년보장교원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수를 초

과하여 정년보장교원 교수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단, 이후 정년보장교원 수에 포함한다.

제17조의3(정년보장교원의 평정 등) ①위원회는 정년보장 임용대상교원의 업적과 교원으로서의 품위, 학교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심사평정표는 승진임용심사평정표를 준용한다.

④정년보장임용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제한규정 등 세부사항은 승진임용시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⑤(삭제 2016.09.30.)

⑥(삭제 2016.09.30.)

제18조(승진기간과 연구실적) ①교원이 승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저소요년수(이하 ‘승진기간’이라 한다)와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8.10., 2013.02.27., 2014.06.23., 2014.12.24., 2015.05.26., 2016.05.24., 2016.11.29., 2018.08.23.)

구분	부교수승진	교수승진
기간	6	6
연구실적 (%)	인문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 학술지 주저자 1편 포함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 학술지 주저자 1편 포함
	사회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SCOPUS 포함)이상 600% 포함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SCOPUS 포함)이상 600% 포함
	이공A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이공B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이공C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이공D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산학협력 계열 900 - 산학협력 연구실적 단, 외부수탁 실적 300점 이상 포함	900 - 산학협력 연구실적 단, 외부수탁 실적 300점 이상 포함
	의대 - SCI급 학술지 이상 주저자 논문 Impact	- SCI급 학술지 이상 주저자 논문 Impact

3-2-1~10 제3편 행 정

구분		부교수승진	교수승진
예 체 능 계 열	기초계열 (의예과)	Factor합이 24이상(Impact Factor 20이상의 주저자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 승진기간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 만큼 비례로 Impact Factor를 누적한다. 또는 900 - SCI급 이상. 다만, SCI급 학술지 주저자 600% 포함(신설 2017.12.20.)	Factor합이 30이상(Impact Factor 20이상의 주저자 논문 1편으로 대체 가능) 승진기간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 만큼 비례로 Impact Factor를 누적한다. 또는 900 - SCI급 이상. 다만, SCI급 학술지 주저자 700% 포함(신설 2017.12.20.)
	의학계열 (기초임상)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 임상 교원은 따로 정함.	900 - SCI급 학술지 이상 ※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 임상 교원은 따로 정함.
	이론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 주저자 1편 포함	9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다만, SCI급 주저자 1 편 포함
	실기	1500 - 국내A급 공연 및 전시실적.	1500 - 국내A급 공연 및 전시실적.

※ 국내저명학술지이상 학술지란 국제저명, 국제전문, 국제일반학술지 및 국내
저명학술지를 의미함.

※ SCI급 논문이란 SSCI, A&HCI, SCI, SCIE 게재 논문을 의미함.

② 학술지의 정의와 범위는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2.08.10)

③ 제1항에서 연구실적 환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 모든 계열에서
동일하게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은 승진에 필요한 SCI급 최저논문실적의 50/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국제(국
내)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 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
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증되는 해당학과 교원의 발표실적은 30/100까지 대
체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08.10., 2013.02.27., 2013.12.26., 2014.03.31.,
2014.06.23., 2014.12.24., 2015.05.26., 2015.12.29., 2016.11.29., 2018.02.22.,
2018.08.23.)

구분		부교수승진	교수승진
기간		6	6
연 구 실 적	인문	① 인문계열 필수요구사항인 SCI급 주저자 1편은 SCI급 공동저자 2 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다만, 국내저 명학술지이상 실적으로 대체 시 승진기준점수는 1500%(점)를 달성 한 경우에 인정가능함.	
	사회	② 인문·사회계열은 학술저서(일반,전문)실적으로 승진기간 중 국내	

구분		부교수승진	교수승진
(%)		저명학술지실적 100%(점)까지 대체 가능함. ③ 패션디자인전공의 필수요구사항인 SCI급(SCOPUS 포함)이상 600%는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신설 2018.05.29.)	
	이공A	(삭제 2014.03.31.)	
	이공B		
	이공C	① (삭제 2014.03.31.) ② 계획·설계 전공교원은 5개국이상(G8 국가 중 최소 2개국 포함) 참여 국제공인현상설계 및 공모전 3위권 이내 실적으로 승진기간 중 SCI급 논문 150%(점)까지 대체로 인정 가능함 (삭제 2018.05.29.) ③ 이공C계열 중 계획·설계 전공자는 요구사항인 SCI급 논문에 대해 국내저명학술지 및 SCOPUS학술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단, 국내저명학술지로 대체 시 필수요구점수의 2배수, SCOPUS학술지로 대체 시 1.5배수를 달성하여야 인정 가능함.(신설 2018.05.29.) ④ 이공C계열 중 보건과학대학 소속 교원(의용생체공학과는 제외)은 요구사항인 SCI급 논문에 대해 1/2(450%)까지 국내저명학술지 및 SCOPUS학술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단, 국내저명학술지로 대체 시 필수요구점수의 2배수, SCOPUS학술지로 대체 시 1.5배수를 달성하여야 인정 가능함.(신설 2018.05.29.)	
	이공D	(삭제 2016.11.29.)	
	산학협력 계열	산학협력 연구실적은 외부수탁 연구비, 산업체 연구비, 지식재산권, SW개발, 기술이전, 산학협력사업, 기자재 활용 수익, 교원 창업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연구 실적 중 SW개발, 산학협력 사업, 기자재 활용 수익 실적은 200%까지만 인정한다. 단, 승진에 필요한 산학협력 연구실적 최소기준의 40/100까지 SCI급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하다.	
	의대 기초계열 (의예과)	인문사회의학(예방의학, 의학교육학, 의학통계학, 의사학, 의료인문학) 교원은 사회계열에 준하되, 필수요구사항인 SCI급(SCOPUS포함) 논문은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	
	의학계열 (기초, 임상)	필수요구사항인 SCI급 논문은 SCOPUS학술지 논문 1.5배수로 대체 가능하고 승진기준점수의 1/3까지는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 ※ 한의과대학 원전학 전공은 사회계열에 준하되, 필수요구사항인 SCI급(SCOPUS포함) 논문은 국내저명학술지 2배수로 대체 가능함.	
	예체능계열	이론	필수요구사항인 SCI급 주저자 1편은 SCI급 공동저자 2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 논문실적으로 대체 가능함. 다만,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실적으로 대체 시 승진기준점수는 1500%(점)를 달성한 경우에 인정가능함.
실기		SSCI, A&HCI 논문게재 시 주저자 논문 1편당 국내A급 무대(전시장) 300%(점), 공저자 논문 1편당 국내A급 무대(전시장) 100%(점)로 대체 인정이 가능함.	

※ 기타 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에관한세칙에 의한다.

④승진임용시의 연구실적물은 임용전 직급 재직기간중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조교수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아니한

3-2-1~12 제3편 행 정

교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박사학위 취득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전적대학(4년제 정규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기간(전임강사 경력은 최대 2년까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은 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본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부교수 승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8., 2017.02.23.)

⑦전적대학(4년제 정규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기간은 승진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본교에서 2년 이상 재직하여야 교수 승진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전적대학에서 부교수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고 본교에 부교수로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본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교수 승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02.23.)

⑧조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 년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4년으로 할 수 있다.

⑨부교수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환산경력이 14년 이상이고 국책연구소 등 저명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이면 본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후 교수 승진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과 연구경력 인정여부는 신규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7.02.23.)

⑩제1항에서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 해당 학과는 별표 6과 같다.

⑪승진임용 심사 유보 및 탈락으로 인하여 승진 임용 전 직급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한 교원에 대한 1항의 기본연구실적 기준은 초과된 직급 승진기간 만큼 비례하여 6개월 단위로 가산한다.(신설 2018.05.29.)

제18조의2(기간제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 ①교원의 기간제임용기간중 필요한 최저연구실적은 다음과 같고 모든 계열에서 동일하게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은 재임용에 필요한 최소 연구실적의 50/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국제(국내) 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 시행에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증되는 해당 학과 교원의 발표실적은 30/100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와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소속 임상교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8.10., 2013.12.26., 2014.03.31., 2014.06.23., 2014.12.24., 2015.05.26., 2015.12.29., 2016.08.30., 2016.11.29., 2018.02.22.)

구분		조교수	부교수	비고
기간		6	6	-
연구실적 (%)	인문계열	480	480	모든 연구실적은 국제지명, 국제전문, 국제일반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게재되어야 인정함
	사회계열			
	이공A계열			
	이공B계열			
	이공C계열			
	이공D계열			
	의대기초계열 (의예과)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이론 실기	600	6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계약 임용교원의 최저 연구실적은 계약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2.08.10)

제18조의3(심사기구) ①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임용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 및 기간제임용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위원을 위촉한다.

③전항의 평정위원은 교무처장, 심사대상교원의 소속대학장 및 학부장, 당해 학부의 상위직위 또는 동급직위의 교원 2인 등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교무위원이 평정대상자인 경우의 평정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행한다.

제18조의4(심사항목) ①승진 및 기간제임용 대상교원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총점은 120점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8.10., 2013.06.28., 2014.06.23., 2014.12.24, 2015.05.26.)

1. 교원업적평가(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 100점 (개정 2014.06.23., 2016.11.29.)

2. (삭제 2014.06.23.)

3. (삭제 2014.06.23.)

4. 자질 및 기여도 20점

3-2-1~14 제3편 행 정

②교원이 업적평가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심사기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영년근속상은 가점에서 제외한다.

1.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 5점
2. 국무위원급이상 표창, 이사장표창, 총장표창 : 4점
3.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의 학술상 : 3점
4. 기타의 제표창 : 2점

③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점으로 평정한다.

1. 정직 : 5점
2. 감봉 : 3점
3. 견책 및 경고 : 1점
4. 시말서 제출 : 1회당 0.3점

제18조의5(심사방법 및 절차) ①승진 및 기간제 임용대상자는 업적조서를 작성하여 학(부)장을 통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②교무처장은 승진 및 기간제임용심사를 위하여 평정위원에게 별표 2의 심사평정표에 의한 평정을 의뢰한다.

③교무처장은 심사평정 결과를 관련서류와 함께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한다.

④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인에 임용·제청한다.

제18조의6(임용기준) ①승진 및 기간제임용은 평정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평균평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8조의 4 제1항의 규정 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심사는 임용 심사 직전연도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단대 및 본부평가위원회에서 검토·확인하여 100% 반영하고 제4호에 대한 심사는 임용기간 중의 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임용기간이라 함은 임용 심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임용기간을 의미한다. (개정 2013.06.28., 2013.12.26)

③임용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업적평가실적이 없는 교원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개정 2013.12.26.)

④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임용 제청동의 기준은 그 임용기간 중의 연구실적을 충족하고 심사평균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승진 및 기간제임용의 제한)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기간제임용 및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1. 연구실적이 소요기준에서 미달하는 경우
 2. 심사평정결과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3.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신설 2013.04.01., 개정 2016.09.30.)
- ②교원이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대연한은 다음과 같으며, 최대연한 만료일이 속한 학기말에 당연 면직된다. 다만, 3호의 경우에 정년보장교원 임용내규 제3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정년보장임용 순위결정 심사에서 탈락한 교원은 당연 면직되지 아니하고, 교수대우 교원의 동일 직급 최대연한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4.01., 2017.12.20.)

1. (삭제 2012.08.10)
 2. 조 교 수 : 9년
 3. 부 교 수 : 9년
- ③교원이 승진임용일 1개월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④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훈포장, 표창, 공로상 등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⑤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징계일 이후의 첫 승진예상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0조(재임용) ①임면권자는 당해 교원(계약제 및 기간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 여

3-2-1~16 제3편 행 정

부 등을 참작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법령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⑤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비정년트랙교원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에서 규정한 기준이 아닌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⑦임용기간 만료로 재임용 대상 교원으로 통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심의기간중에는 휴직할 수 없다.

⑧삭제(2015.05.26.)

제20조의2(근무기간) 승진 및 기간제임용 대상 교원이 근무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정하여 계약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승진 및 기간제 임용의 연구실적물 제출)①연구실적물은 제출된 실적물(인증된 실적)을 원칙으로 평가하며 심사일 현재 게재예정 중에 있는 연구실적물은 게재 확정일 및 출판일자가 재임용 예정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게재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되, 당해 임용기간내 출판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을 받은 별쇄본(온라인 출판 포함)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06.23., 2016.05.24.)

②상기 1항의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반드시 학술지 출판 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임용기간내에 발간된 실적이어야 한다. 만약 연구실적 중 원본 제출이 어려워 PDF파일로 제출할 경우에는 출판일이 명기(이 경우 출판일자는 반드시 오프라인 상의 출판일자 또는 KRI검증 결과 인정된 출판일자이어야 함)된 논문집 표지(Cover, 권 호수 표시)와 전체 목차 및 페이지를 모두 출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심사에서 인정되는 온라인 출판연구실적은 게재확정 증빙자료와 온라인 출판일자가 명시된 출력물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4.06.23., 2016.05.24.)

제20조의4(보직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 임용)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부총장, 처장(부처장 포함) 보직교원과 협력병원에서 원장, 부원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교원은 승진 및 기간제(계약제)임용실적 평가시, 평가 대상기간에서 보직으로 재직한 기간(부처장은 1/2만 인정)을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최소 연구업적 점수를 충족하면 승진 및 재임용 할 수 있다. 다만, 보직기간 산정은 최소 월 단위로 하고 최소 연구업적 점수 환산 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개정 2012.11.30., 2013.12.26., 2014.06.23., 2018.05.29.)

제 4 장 보 수

제21조(보수) ①교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정한다.

②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의2(초임호봉의 획정) ①교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3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년수에 별표 4에 의하여 산출된 경력년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5에 의한 가산호봉에 합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②제1항의 경력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 받는 경력은 각각 그 기간을 합산한 후 월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그 합산된 기간을 환산율에 따라 계산하되, 월 이하의 잔여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반영한다.

제21조의3(호봉의 재획정) ①교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승급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교원의 경력은 경력합산이 확인되거나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재획정한다.

3-2-1~18 제3편 행 정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교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④호봉의 재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반영한다

제21조의4(특별승진·승급)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2, 제18조 및 제22조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승급할 수 있다.

1. 교원업적과 직무수행능력이 특히 탁월한 경우
2. 교육 및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②특별승진·승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승급) ①교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교원의 승급은 매년 3월에 실시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의 차기 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로 한다.

④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부총장, 처장(부처장) 보직교원과 협력병원에서 원장, 부원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원은 재임기간 및 재임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제22조의 2의 제2항 및 제22조의 4에 의한 승급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4.06.23.)

제22조의2(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은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정직 12월, 감봉 6월, 견책 3월

②교원업적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서 60점미만인 교원은 호봉 정기 승급을 동결할 수 있다.

③수업만족도평가규정 제6조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호봉 정기 승급을 동결한다. (신설 2013.12.26.)

제22조의3(승급기간·시기의 특례)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 기간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총장의 명에 따라 해외연수를 하거나 정관 또는 제규정에 의거한 학교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거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에 직위해제된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징계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의 기간
4.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

제22조의4(정년보장 교원의 승급 등) ①정년보장 교원의 승급은 매년 실시하는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을 근거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임상교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2.24., 2015.05.26.)

②제1항에 정한 정년보장교원이 승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동안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논문 200% 이상을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실기 위주의 예능계열 교원은 최근 2년동안 국내A급 이상 공연·전시실적 200%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에 필요한 논문실적은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으로 50/100까지 대체 가능하고, 국제(국내) 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증되는 해당학과 교원의 발표실적은 승급기준의 30/100까지 대체 가능하다. 또한, 이공C계열의 설계전공의 경우 3개국이상 참여하는 국제공인 또는 전국단위의 공인된 현상설계 및 공모전 3위권 이내 1편(단독기준)에 한하여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100%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8.10., 2012.11.30., 2014.03.31., 2014.06.23., 2014.12.24., 2015.12.29., 2018.02.22.)

③제2항에서 정한 정년보장교원이 승급 외에 2006년 3월1일 이후 임용되어 정년보장교수로 승진임용된 교원의 승급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논문 300%, 이공계열(의학계열 포함)은 최근 2년 동안 SCI급 논문 200% 이상(의과대학 의예과 교원은 SCI급 논문 200% 이상 또는 SCI급 주저자 Impact Factor합 4이상으로 택일 가능)으로 하되 이공C계열의 계획·설계 전공자 및 이공D계열과 의학계열은 학술지 간 대체인정 시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고, 실기 위주의 예능계열 교원은 국내 A급 이상 공연 전시실적으로 3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급에 필요한 논문실적은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으로 50/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국제(국내) 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증되는 해당학과 교원의 발

3-2-1~20 제3편 행 정

표 실적은 승급기준의 30/100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30., 개정 2013.12.26., 2014.03.31., 2014.12.24., 2015.12.29., 2016.05.24., 2018.02.22.)

④정년보장교수 중 지정형 산학협력교원으로 위촉된 교수의 승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24., 2016.11.29.)

제22조의5(교수대우 교원등의 처우 및 승급) ①교수대우 교원이란 2013년 4월 1일 이전 교수승진임용을 위한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고 정년보장심사에 대기 중인 부교수 직급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13.04.01)

② 전 항의 교원은 부교수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교수 직급과 동등한 처우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교수 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04.01)

③ 교수대우 교원과 前 가천의과대학교 교수 직급 중 정년보장을 받지 못한 교원의 승급기준은 제22조의 4 제2항에서 정한 정년보장 교수 승급 기준의 1.5배를 적용한다. 다만, 승급에 필요한 논문실적은 기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 등록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으로 50/100까지 대체 가능하며, 국제(국내)전문학술서 및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따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실적으로 인증되는 해당학과 교원의 발표 실적은 승급기준의 30/100까지 대체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3.04.01., 개정 2014.03.31., 2014.12.24., 2015.12.29., 2018.02.22.)

④지정형 산학협력교원으로 위촉된 교원의 승급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29.)

제22조의6(정년보장교수 임용 탈락 교원의 승급)정년보장 교수로 승진에 필요한 기본 연구실적과 ‘정년보장교원 임용내규’에서 정한 정년보장임용심사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으로서 2017년 4월 1일 이후에 정년보장 교수 임용에 탈락한 부교수의 호봉 승급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09.30.)

1. 교원업적평가 결과 60점 이상
2. 최근 2년간 국내저명학술지 200% 이상

제 5 장 복 무

제23조(성실의무) 교원은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성실히 연구·교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제규정준수의무) 교원은 법령,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 및 본 대학교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준수의무) ①교원은 본 대학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원은 총장의 승인없이 학교 직무수행상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제27조(겸직금지) 본 대학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겸직이나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의2(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전임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의학·한의학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③ 교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7.08.29.)

제27조의3(교원파견) 본교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학술관련 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신상변동의 신고)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호적상의 변동
2. 주거지의 변경
3. 이력상의 변동
4. 기타 인사기록사항의 변동

제 6 장 신분보장

3-2-1~22 제3편 행 정

제29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되거나 정원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4.06.2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의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2.08.10, 2015.05.26.)
9.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지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다만, 강의전담 비정년트랙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15.05.26.)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임용된 때

제31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06.23.)
2. 제3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3. 제3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제3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제3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9. 제3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이 2회이상일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3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교원은 휴직전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휴직 중의 교원은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한다.
- ③제3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④임용기간 중 휴직한 교원은 복직 후 임용 잔여기간을 복무한 후에 재임용 및 승진 심사를 한다. 다만, 제3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5.26.)
- ⑤휴직으로 인하여 승급에 필요한 근속기간(1년)이 부족한 교원은 승급할 수 없다.(개정 2015.05.26.)

제33조(직위해제)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신설 2015.02.13., 개정 2017.02.23.)
- 2. 교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여 총장이 징계의결을 요청한 자 (신설 2017.02.23.)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5.02.13.)

- ② (삭제 2015.02.13.)
- ③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 (개정 2015.05.26., 2017.02.23.)
- ④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 직위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교원을 복직시킨다.(개정 2015.05.26.)
- ⑤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는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능력회복 또는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특별연구과제의 부여 등의 조치를 한다.(개정 2015.05.26.)
- ⑥제5항에 정한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이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진

3-2-1~24 제3편 행 정

의 정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34조(정년과 퇴직) ①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교원은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종료로써 퇴직한다.

③임용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퇴직할 수 없으며 학기말로 의원 퇴직하는 경우 퇴직 희망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09.30.)

제35조(당연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제11조의 6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2.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 다만, 근무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사망하였을 때
4. 임용기간 만료후 재임용되지 못하였을 때

제36조(복직및구제임용의평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능력평가위원회의 공개강의 평가 및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제 임용 탈락 후 5년 이상 경과한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구제되는 경우
2. 해임 및 파면 등으로 임용이 취소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
3. 기타 본 대학교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 하지 않은 교원이 복직 등을 하는 경우

②교원인사위원회는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임용제청 여부를 심의할 경우 교육능력평가위원회의 공개강의 평가 결과 및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실적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능력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처장, 기획처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해당 단과대학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④ 기타 복직및구제임용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37조(포상) 교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

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신규임용 교원이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연구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경우
5. 본교 구성원(졸업생을 포함한다)들을 사주·선동·교사하여 대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끼친 때

제39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한다.

②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④정직은 1개월, 3개월, 12개월의 기간으로 한다.

제40조(징계의 절차) 교원의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처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96.7.19 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및 기간제 임용기간중의 연구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18조 제2항, 제18조의 2 제1항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교원인사에 관한 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교원의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1997년 9월 1일부터 1999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제임용 대상자는 교육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용기간을

3-2-1~26 제3편 행 정

적용하고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 이전의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②1997년 10월 1일부터 1998년 10월 1일까지의 승진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및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 이전의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8조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되 1999년 4월 1일자 및 10월 1일자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 300%를 적용한다.

④1999년 3월 1일 현재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최대연한을 넘어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1999년 3월 1일까지 당해 직급에 재직한 연수에 1년의 기간을 더한 기간을 제20조 제2항의 최대연한으로 본다.

제3조(정년보장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에 잔여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정년 보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업적에 한하여 심사하되, 연구실적물은 200%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8조의 경우 2006년 8월 31일까지 부교수 승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승진심사 계열	2003년 9월 1일 ~ 2004년 8월 31일	2004년 9월 1일 ~ 2005년 8월 31일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인문계열	300% [학회지 1편 포함]	350% [국내A급 학술지 1편 포함]	350%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사회계열	350% [학회지 1편 포함]	400% [국내A급 학술지1편 포함]	400%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이공계열A 이공계열B 의학계열	400% [학회지 1편 포함]	400% [국제A급 학술지 0.5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0.5편은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1.5편으로 대체 가능	400% [국제A급 학술지 1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1편은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3편으로 대체 가능
이공계열C	400% [학회지 1편 포함]	400% 국내A급 학술지 1편 포함]	400%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예·체능 계열	350%	350% 국내중앙무대(1급) 0.5회 포함]	400% 국내중앙무대(1급) 1회 포함]

②제18조의 경우 2007년 8월 31까지 교수승진(정년보장임용)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승진심사 계열	2003. 9. 1~ 2004. 8. 31	2004. 9. 1~ 2005. 8. 31	2005. 9. 1~ 2006. 8. 31	2006. 9. 1~ 2007. 8. 31
인문계열	400% [학회지 1편 포함]	450% [국내A급 학술지 1편 포함]	475%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500% [국내A급 학술지 3편 포함] * 국내A급 학술지 1편에 한하여 전문저서(100%)로 대체 가능
사회계열	450% [학회지 1편 포함]	450% [국내A급 학술지 1편 포함]	500%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550% [국내A급 학술지 3편 포함] * 국내A급 학술지 1편에 한하여 전문저서(100%)로 대체 가능
이공계열A	500% [학회지 1편 포함]	500% [국제A급 학술지 0.5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0.5편은 국내A/국제B급 학술지 1.5편으로 대체 가능	550% [국제A급 학술지 1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1편은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3편으로 대체 가능	600% [국제A급 학술지 1.5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1편에 한하여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3편으로 대체 가능
이공계열B 의학계열	500% [학회지 1편 포함]	500% [국제A급 학술지 0.5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0.5편은 국내A/국제B급 학술지 1.5편으로 대체 가능	550% [국제A급 학술지 1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1편은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3편으로 대체 가능	600% [국제A급 학술지 1.5편 포함] * 국제A급 학술지 1편은 국내A급/국제B급 학술지 3편으로 대체 가능
이공계열C	500% [학회지 1편 포함]	500% [국내A급 학술지 1편 포함]	550% [국내A급 학술지 2편 포함]	600% [국내A급 학술지 3편 포함]
예·체능 계열	450%	450% [국내중앙무대(1급) 0.5회 포함]	500% [국내중앙무대(1급) 1회 포함]	550% [국내중앙무대(1급) 1.5회 포함]

③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한 기간제임용은 2003년 8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제22조의 4의 경우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승급시에는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실적물을 해당기준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2004.2.28이전에 발간되는 연구실적물의 등급(국제 또는 국내 A,B,C급 학술지) 구분은 교원연구실적평가에 관한세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한 계약제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 제11조는 2007년 3월 1일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전 경원전문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평정기준 및 승진, 승급, 기간제 임용 심사기준) 승진, 승급 및 기간제 임용심사시 연구실적 평정은 경원전문대학 재직기간은 경원전문대학 평정기준으로, 통합대학교 재직기간은 통합대학교의 평정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전문대학 존속기간은 전문대학 재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경우 2009.2.28일까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연구실적 중 국내A급 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를 포함하고, 국제A급 학술지는 SCIE논문을 포함한다.

제3조(기간제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 2 제1항의 경우 2010.2.28일까지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정년보장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계약제 교원의 정년보장임용은 제17조의 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원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하여 임용한다. 다만,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는 승진소요 최저 연수는 5년으로 한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임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제20조 제2항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0. 2.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조교수로의 재임용, 부교수 승진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은 부교수로의 재임용, 교수 승진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재직중인 교원 중 2011년 4월 1일 까지의 재임용 대상자는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의 개정(2010.3.1.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2010년 3월 이전)을 적용한다.

부 칙(2011.03.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경과조치) ①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의 개정(2011년 3월 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은 부교수로의 승진 및 조교수로의 재임용 시에 국제A급 학술지에 국제B급(SCIE제외), 국제C급(SCIE제외) 학술지를 포함한다.

②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의 개정(2011년 3월 1일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은 교수로의 승진 및 부교수로의 재임용 시에 국제A급 학술지에 국제B급(SCIE제외), 국제C급(SCIE제외) 학술지를 포함한다.

③2007년 3월 1일 이전에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으로, 2008년 4월 1일자 또는 2008년 10월 1일자에 조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부교수 승진소요 최저 연수는 4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임용기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 교원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3-2-1~30 제3편 행 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제22조의 4)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 2014년 3월에 시행하는 정기호봉승급까지는 아래표와 같이 연구실적을 적용한다.

승급시기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4년 3월
연구실적	중전의 규정 적용	연구실적200% (국내B급 이상 133%)	연구실적200% (국내B급 이상 1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제1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02월 29일 이전에 임용된 계약제교원은 중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 가천의과학대학교 교원의 승진 및 기간제 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및 기간제임용은 각 1회에 한하여 2008년 03월 01일자 (구)경원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세부 심사방법 및 정교수 직급 교원의 정년보장임용 심사에 관한 사항은 통합 전 합의된 협약서에 의거, 따로 정한다.

②승진 및 기간제임용 시 연구실적 평정기준은 2008년 03월 01일자 (구)경원대학교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의한다. 다만, 통합 이후 실적에 대해서는 통합대학교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의해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 및 재임용 시 교원업적평가 심사항목 배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제18조의 4)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02월29일 이전 승진 및 재임용 심사항목 배점은 중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교원은 전원 조교수로 직급을 전환하여 임용하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시행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외국인 교원의 처우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정년보장교원의 승급기준 경과조치) 이 규정(제22조의 4 제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08월31일 이전에 출판된 국내전문학술지는 국내저명학술지에 포함하되 평가배점은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제22조의 4 제2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10월31일 이전에 발표된 공연 및 전시실적은 국내A급이상 공연전시실적에 포함하되 평가배점은 교원연구실적평가지행에관한세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12년 02월 말일 이전에 임용된 이공계열(이공C계열 제외) 및 의학계열 교원에 한하여 이 규정(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 직위에 승진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02월 말일 이전에 임용된 인문·사회계열, 이공C계열, 예체능계열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표에 규정된 연구실적 기준 “72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단, 주저자 5편 포함”은 모두 “12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으로, “72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 단, 국제일반학술지 이상 실적 280% 및 국제일반학술지이상 주저자 3편 포함”은 모두 “1200 - 국내저명학술지 이상”으로, “900 - 실기배점 50%이상인 공연 및 전시실적. 단, 국내A급(작곡발표회, 개인연주회, 개인전) 3회 이상, 연기예술은 국내저명이상 실적 300% 포함.”은 모두 “1200 - 국내A급 공연 및 전시실적”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3.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제17조의3 제5항, 제6항은 2013년 10월1일 정년보장임용 대상자 심사 시부터 적용한다.

②제22조의5 제3항의 기준 적용 시 2013년 1월1일 연구실적부터 평가 대상으로 기산한다.

2014년	2015년	2016년
최근1년 연구실적	최근2년 연구실적	최근3년 연구실적

부 칙(개정 2013.05.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 임용의 제한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신설에 따라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부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제 19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3.04.01.자 기준 부교수 재직 3년 이하 : 동일직급 최대연한 10년
2. 2013.04.01.자 기준 부교수 재직 3년 초과 4년 이하 : 동일직급 최대연한 11년
3. 2013.04.01.자 기준 부교수 재직 4년 초과 5년 이하 : 동일직급 최대연한 12년
4. 2013.04.01.자 기준 부교수 재직 5년 초과 6년 이하 : 동일직급 최대연한 13년

제3조 이 규정 제22조의 5에 해당하는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년보장 심사 또는 제17조 3의 제5항에 의한 심사 중 선택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4조 별표 6의 계열변경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이후 간호학과 소속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은 의학계열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계약제 교원의 재계약기준은 기존 계약기간까지 종전 계약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부교수 또는 정년미보장 교수로 재직 중인 교원이 동일직급 최대연한까지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면 면직되지만, 연구중점교수를 신청하는 경우 3년간 면직을 유예하되, 아래의 의무 논문실적을 충족하는 경우 정년보장으로 교원으로 임용한다.

계열	연구중점교수 의무 논문실적
이공계열	SCI급 750%
인문·사회·예체능계열	SCI급 또는 SCOPUS 500%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제22조의 4)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일자 정기 호봉 승급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연구실적
제22조의 4 제2항에 해당하는 교원	국내저명학술지 167% 이상
제22조의 4 제3항의 인문·사회계열	국내저명학술지 250% 이상
제22조의 4 제3항의 실기 위주의 예능계열	국내A급 이상 공연실적 250%
제22조의 4 제3항의 이공계열	SCI급 167%
제22조의 5에 해당하는 교원	국내저명학술지 250% 이상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6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재직 중인 기초의과학부 교원의 차상위 직급 승진과 차기 재임용은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 18조의2, 제22조의4, 제22조의5에 적용되는 기

3-2-1~34 제3편 행 정

술료 이전실적, 국제 및 국내특허등록실적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실적부터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18조, 제18조의 2, 제22조의 4 및 제22조의 5의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은 2016년 1월1일 이후 계약된 실적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 제18조의 2, 제22조의 4 및 제22조의 5의 국내 및 국제 전문학술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출간된 저서부터 적용한다.

③제18조, 제18조의 2, 제22조의 4 및 제22조의 5의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2016년 1월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제18조(승진기간과 연구실적) 중 이공D계열의 의과대학 의예과 소속 교원의 승진기준은 2016년 5월23일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 제22조의 4(정년보장 교원의 승급 등)의 의과대학 의예과 교원에 대한 IF(Impact Factor)합은 2017년도 실적분부터 적용하며 2018학년도 승급 심사에 최초 반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28일 이전 신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의대 의예과 교원의 승진 기준은 임용 당시 종전규정으로 상위 직급 승진 심사를 하고 2014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의대 의예과 교원은 차기 재계약일을 기준으로 이전 승진 기준과 개정된 승진조건을 병합하여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기준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8조 제9항의 연구기관과 연구경력 인정은 2017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제18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승진 임용 심사시에는 이 규정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3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 18조의2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기존 계약에 의거 재직 중인 교원은 차후 기간제 재임용 심사시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기간과 연구실적 경과조치) ①제18조 3항 이공C계열 중 보건과학대학 소속 교원(의용생체공학과 제외)의 SCI급 논문의 1/2(450점)까지 국내저명 학술지 및 SCOPUS 학술지 논문실적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현 직급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되, 2019년 10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8조 11항의 적용은 직급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2019년 4월 1일자 승진임용 평가 결과를 최초 유보 또는 탈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9년 10월 1일자 승진 임용 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기간과 연구실적 경과조치) ①이 규정 제18조 11항의 개정(2018.05.29.일자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2018.05.29.) 이전에 재직 중인 조교수, 부교수에 대한 제18조 11항의 적용은 2021년 4월 1일자 승진임용 평가 결과를 최초 탈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1년 10월 1일자 승진 임용 평가부터 적용한다.

②이 규정 제18조 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 재직 중인 교원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직급산정시의 경력환산율표

번호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	공인된 체육단체(공익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전문대학)의 체육코치	50
2	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한 학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0
3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 또는 전문대 정도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60
4	학력인정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 정도의 각종 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5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6	사관학교의 교관(교수부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7-1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 교육경력	30~50(주당5시간 이하는 30%,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씩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7-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교육경력	50
8	박사학위과정 불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	5년으로 인정
9	석사학위과정 이수자의 연구경력(학위취득자)	2년으로 인정
10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무급조교 포함)로 근무한 경력	50
1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3-2-1~38 제3편 행 정

번호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1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13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100
14	신학대학 졸업자의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한 경력	50
15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50
16	대학(전문대 포함)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준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17	대학(전문대 포함)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60
18	대학(전문대학 포함)전공분야를 다음의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①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병원 또는 중소기업체를 제외한 대기업체와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단체(병원기업체 포함)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기업체	50
1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병원에서 전임간호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20	변호사 개업기간	70
21	변리사 개업기간	70

번호	경 력 내 용	환 산 인정율(%)
22	국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전문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23	대학(전문대 포함)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2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25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26	상과대학 졸업자로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	50
27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개업기간	50
28	의과대학 졸업자의 (한)의원 개업기간	50
29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가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30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	50
31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석사·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연구경력 단,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그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자의 연구경력	학위취득자의 70 동과정 이수년수의 100 (1년미만 불인정)
32	공업계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33	박사후 연구원(post-doc)경력	70

1. 기타 환산율표상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대학교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시는 1호봉 승급

(별표 3) (개정 2016.11.29.)

호봉획정시의 경력환산율표

유 별	환산율	경 력
제1류	10할	1. 대학(대학원, 전문대를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3. 대한민국 군인으로 근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제2류	7할	1. 교육법에 의한 교육회에서 근무한 경력 2. 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5급 이상인 경우 3. 박사후연구원(post-doc)으로 대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제3류	5할	1. 박사학위 취득 후 국내·외 정규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해 조교로 근무한 경력 2. 고등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전공분야와 부합하고 6급 이하인 경우 4. 공공단체,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 5.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6. 박사학위 취득 후 대기업 민간사업체 연구소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제4류	50~100%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연구원(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 * 1. 제1류, 제2호에 의한 연구기관의 범위는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의 “연구기관” 범위지정] (1983.2.18 문교예규 제172호)이 정한 바에 의한다.
- 2.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경우에는 제1류에 적용되는 율을 적용할 수 있다.
- 3. 정규대학(4년제,2-3년제,대학원대학교 포함)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3-2-1~42 제3편 행정

은 주당 5시간까지는 30%를 적용하고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가 산하되 최고 50%까지 인정한다.

4. 동등 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년수는 5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5.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6. 기타 경력환산에 있어서 기존의 적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제4류의 경력환산은 교원인사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6.11.29.)

(별표 4) (개정 2012.08.10)

교원의 경력년수가감표

구 분 \ 학력별	대 학 졸 업 자	전 문 대 학 졸 업 자
교 수	-10	-13
부 교 수	-7	-10
조 교 수	-4	-7

- * 1. 이 표 중 (+)는 가산년수를, (-)는 감산년수를 의미한다.
- 2. 교원 중 교원자격인정령(대통령령 제4395)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의 초임급 산정에 있어서 교수는 15년을, 부교수는 12년을,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 3. 이 표의 학력에는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2026호)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학력을 포함한다.
- 4. 대학에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개방대학을, 전문대학에는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 5.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을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6. 이 표에 표시하지 아니한 학력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2.08.10)

(별표 5) (개정 2012.08.10)

교원의 기산 호봉표

대 학 직 명 별	기 산 호 봉
교 수	15
부 교 수	12
조 교 수	9

3-2-1~44 제3편 행 정

(별표 6) (개정 2012.08.10., 2013.04.01., 2014.03.31., 2014.06.23., 2014.12.24., 2015.05.26., 2015.08.28., 2016.11.29.)

계열 구분에 따른 해당 학과

계열구분	세부분류	계열별 구분에 따른 해당 학과
인문계열	인문계열	인문대학 소속 학과 및 교육대학원
사회계열	사회계열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및 법과대학 소속 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약학대학(사회약학 전공자), 금융수학과(경영관련 전공자)
이공계열	이공A	나노물리학과, 나노화학,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전기공학과, 설비·소방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기계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에너지IT학과
	이공B	금융수학과, 식품영양학과, 의용생체공학과
	이공C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실내건축학과, 치위생학과 응급구조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이공D	바이오나노학과, 약학대학
	의대 기초계열 (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계열	의학계열	의과대학 의학과, 한의과대학, 간호학과 약학대학(임상약학 전공자)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예술대학 소속 학과

* 가천글로벌아츠칼리지는 해당교원의 전공에 따라 계열을 적용함.

(별표 7) (신설 2016.11.29.)

산학협력 교원 경력 완화 기준

구 분	경 력
경력 3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박사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교수에 한함)
경력 2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 교수에 한함)

※ 임용계약 시 경력완화 적용 사유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서식 제1호)

소속 부서	담당	장	장

소관 부서	담당	장	장	장	장

휴 직 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인은 다음과 같이 휴직하려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개월간
 20 년 월 일까지

2. 사 유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